

2025년도 한-프랑스(ANR)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

「2025년도 한-프랑스(ANR) 공동연구사업」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3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한국과 프랑스 간 방문연구 및 연구교류 등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

□ 사업내용

- 공모방식 : 자유공모
- 사업형태 : 공동연구
- 지원분야 :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관련 연구
- 지원기간 : 3년 (2025.7.1.~2028.6.30.) ※ 프랑스 측 연구기간 : 2025.9.1.~2028.8.31.
- 지원규모 : 5과제 내외, 과제당 연 270백만원 이내

과제 수	5개 이내		
과제당 연구비	연 270백만원 이내		
기간 및 연구비	총 연구기간	36개월 (2025.7.1. ~ 2028.6.30.)	810백만원 이내
	1차년도	6개월 (2025.7.1. ~ 2025.12.31.)	135백만원 이내
	2차년도	12개월 (2026.1.1. ~ 2026.12.31.)	270백만원 이내
	3차년도	12개월 (2027.1.1. ~ 2027.12.31.)	270백만원 이내
	4차년도	6개월 (2028.1.1. ~ 2028.6.30.)	135백만원 이내

○ 지원내용 : 연구개발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경비 등

※ 프랑스 측 지원 규모 : 과제당 연 200,000 EUR, 3년 간 지원 예정

※ 본 사업은 양국이 1:1로 연구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, 자국 연구자에 대한 비용은 자국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. 다만, 상호 교류 시 상대국 초청비용 등은 연구자 간 합의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 (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 불가)

※ 한국 측 연구개발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에 따라 계상하며,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을 따름

< 신청 시 유의사항 >

1. 연구책임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“제출완료” 처리되어야 합니다.
(“계획서 작성 중”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2. 과제신청서가 한국/프랑스 양국 모두에 접수된 건만 공동 신청과제로 인정됩니다.
 - 한국과 프랑스 연구책임자는 양국 접수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
 - 프랑스 측 접수기한, 연구기간, 연구비, 신청자격 등 세부 내용은 ANR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참조(<https://anr.fr/>)

2.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

□ 신청자격

○ 주관연구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(단, 기업은 제외)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 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상기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및 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
- 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- ※ 프랑스 측 주관연구기관,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등은 ANR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 참조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 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-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□ 신청 및 수행 제한

- **(참여제한)**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
 - 단,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 -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, 반드시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※ 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 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(<http://www.ntis.go.kr> 로그인 후 확인 가능)
- **(참여제한)** 기업은 주관/공동/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하며, 기업 소속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일반연구원(참여연구원)으로 과제 신청 및 수행 불가

- **(차별성 검토)**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 평가단이 차별성 검토 실시
 -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 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- 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검토
- **(중복 신청 제한)** 본 한-프랑스(ANR) 공동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일반연구원(참여연구원)으로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
 -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
- **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** 본 사업은 ‘연구과제 수 상한제(3책 5공)’에 해당함
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(관련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)
 - 단, 해당 과제의 기술적, 정책적 중요성,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

<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 내용>

▶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28., 2022. 12. 6., 2024. 2. 6.>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 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 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 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- 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 - 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 - 나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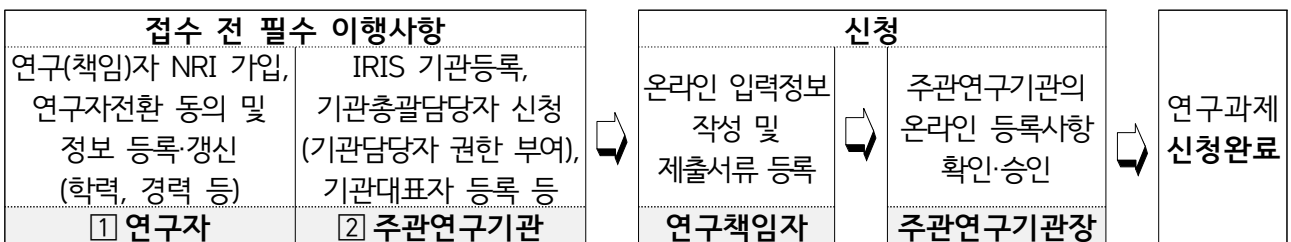
3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2025년도 한-프랑스(ANR) 공동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-R&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*, 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 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/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.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>

- 과제신청 시 대학의 경우,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 요망
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
※ <00대학교>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,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[연구기관] 탭 [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] 항목에서 [지원인력추가]를 통해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 대표자를 <00대학교> 대표자로 등록 가능

- 승인권한은 본교(00대학교) 및 산학협력단(00대학교 산학협력단)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 기한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R&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탈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 - 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 상단의 ‘최종확인’ 완료 이후 ‘제출’ 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-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[최종 확인]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
 - ※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,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, 반드시 다시 [최종확인]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 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

4.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□ 신청기간

구분	내용
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	2025.2.13.(목) 09:00 ~ 2025.5.7.(수) 18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- ※ 프랑스 측 접수 및 승인기간 : 2025.2.13.(목) ~ 5.7.(수) 17:00 (현지시간 기준) (세부 내용 ANR 공고 참조)
- ※ 연구책임자는 기한 내 연구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필히 완료해야 함(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)
- ※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**연구책임자** : [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계획서 제출(신청완료)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
- **주관연구기관** : [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
- **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**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□ 제출서류

양식번호	제출서류
[양식1]	(필수) 국문 연구개발계획서
[양식2]	(필수) 영문 연구개발계획서(양국 공통양식)
[양식3]	(필수)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-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-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-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[양식4]	(필수) 연구개시일 기준 타 과제 수행 현황

- ※ 한국과 프랑스 연구책임자는 양국 접수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, 각 접수기한 내 양국에 과제신청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공동 신청과제로 인정됨
- ※ [양식2]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며, 양국 연구자 간 과제명 및 신청내용의 동일 여부를 사전 확인 요망
- ※ [양식3]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은 한국 측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해당
- ※ [양식4] 연구개시일 기준 타 과제 수행 현황 양식은 한국 측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해당
- ※ 한국 측 예산편성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하여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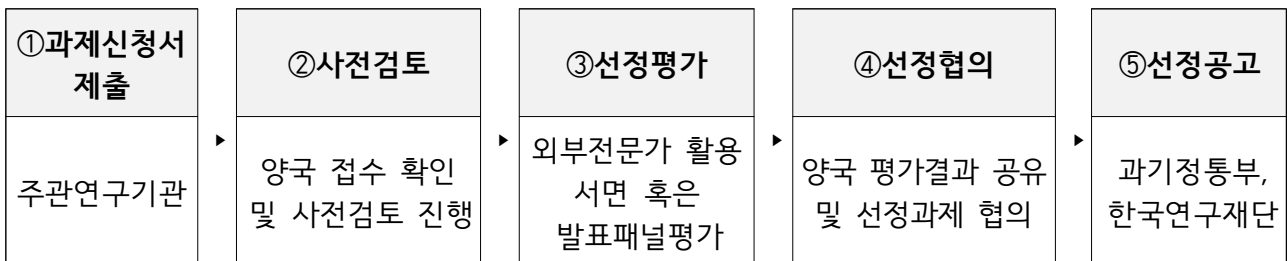
□ 유의사항

-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
-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 - ※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
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/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,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 - ※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(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
-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IP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 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
 - ※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」의 양식을 참고하여 연구책임자 간 협의하여 작성하되,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 대상으로 협약 시 별도 안내
-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
 -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,000불 이상의 금전·유가증권·교통·숙박 등을 제공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·선정·지정·협약·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

5. 평가방법

□ 평가절차



- 사전검토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·단체·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
- 선정평가 : 기술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 책임자의 신청내용과 발표 등을 토대로 검토·토의를 통해 점수 부여
- 선정협의를 :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
- 선정공고 : 상대국과의 협의 결과를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및 선정협의를 결과 보고 후, 과기정통부 최종확정
 - ※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실시하며,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(양국에 신청서가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완료로 인정)
 - ※ 접수 결과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

□ 평가항목(안)

- 연구목표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과 창의성
- 국내/상대국 연구진의 연구개발역량
- 국제협력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성, 수행 계획의 충실성
- 연구결과의 파급효과,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·확대 가능성 등
 - ※ 향후 유럽 프로젝트(Horizon Europe 등)로의 심화·확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가능하며,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
 - ※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6. 추진일정(안)

일정	추진내용
2025.2.13.(목) 09:00 ~ 5.7.(수) 18:00	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
2025.5월 말~7월	선정평가
2025.7월 중	양국 간 선정과제 협의
2025.7월 말	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
2025.7.1.	한국 측 연구개시 (* 7.1 소급적용) ※ 프랑스 측 연구개시 : 2025.9.1.

※ 프랑스 측 접수 및 승인가간 : 2025.2.13.(목) ~ 5.7.(수) 17:00 (현지시간 기준) (세부 내용 ANR 공고 참조)

※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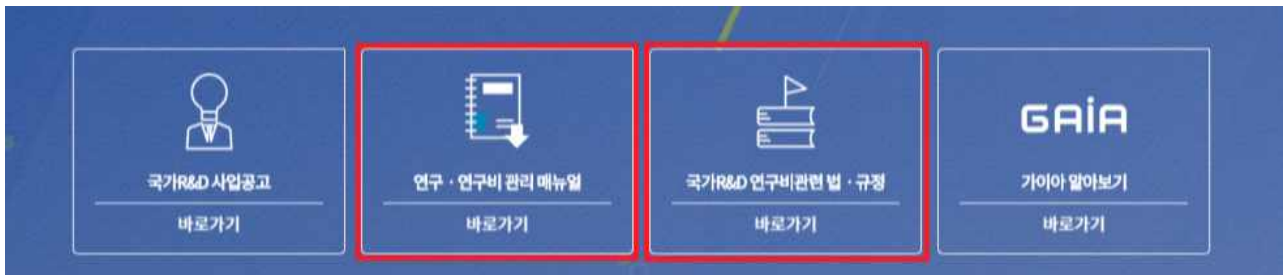
7. 기타 사항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업공지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<https://www.iris.go.kr>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- 법·규정·규칙 :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 →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’,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’ 관련 확인
-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 :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



□ 논문 사사표기 안내

-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,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

▶ 국문표기

이 성과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IRIS 과제번호).

▶ 영문표기

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(MSIT) (IRIS 과제번호).

※ MSIT: Ministry of Science and ICT

※ 성과는 논문,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

□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안내

-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,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

※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,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

□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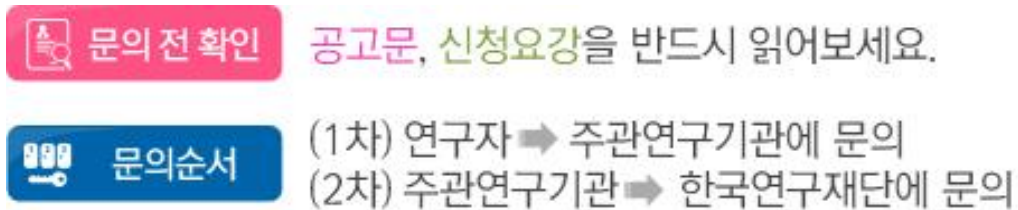
-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(또는 학술대회)를 활용
-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

※ 연구(책임)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

8. 문의방법

□ 문의 절차

“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
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

□ 문의처

- ① (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- ② (한국 측 문의)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
 - (사업 관련 문의) 서성희 연구원 : 02-3460-5723 / seonghui@nrf.re.kr
 - (접수 등 시스템 문의) 이은별 연구원 : 02-3460-5726 / byeol@nrf.re.kr
- ③ (프랑스 측 문의) The 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(ANR)
 - Dr. Aladji KAMAGATE(Scientific Officer) : aladji.kamagate@agencerecherche.fr

- 붙임 1. 국문 과제신청서 양식 1부
2. 영문 과제신청서 양식 1부
3.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1부
4. 연구개시일 기준 타 과제 수행 현황 1부. 끝.